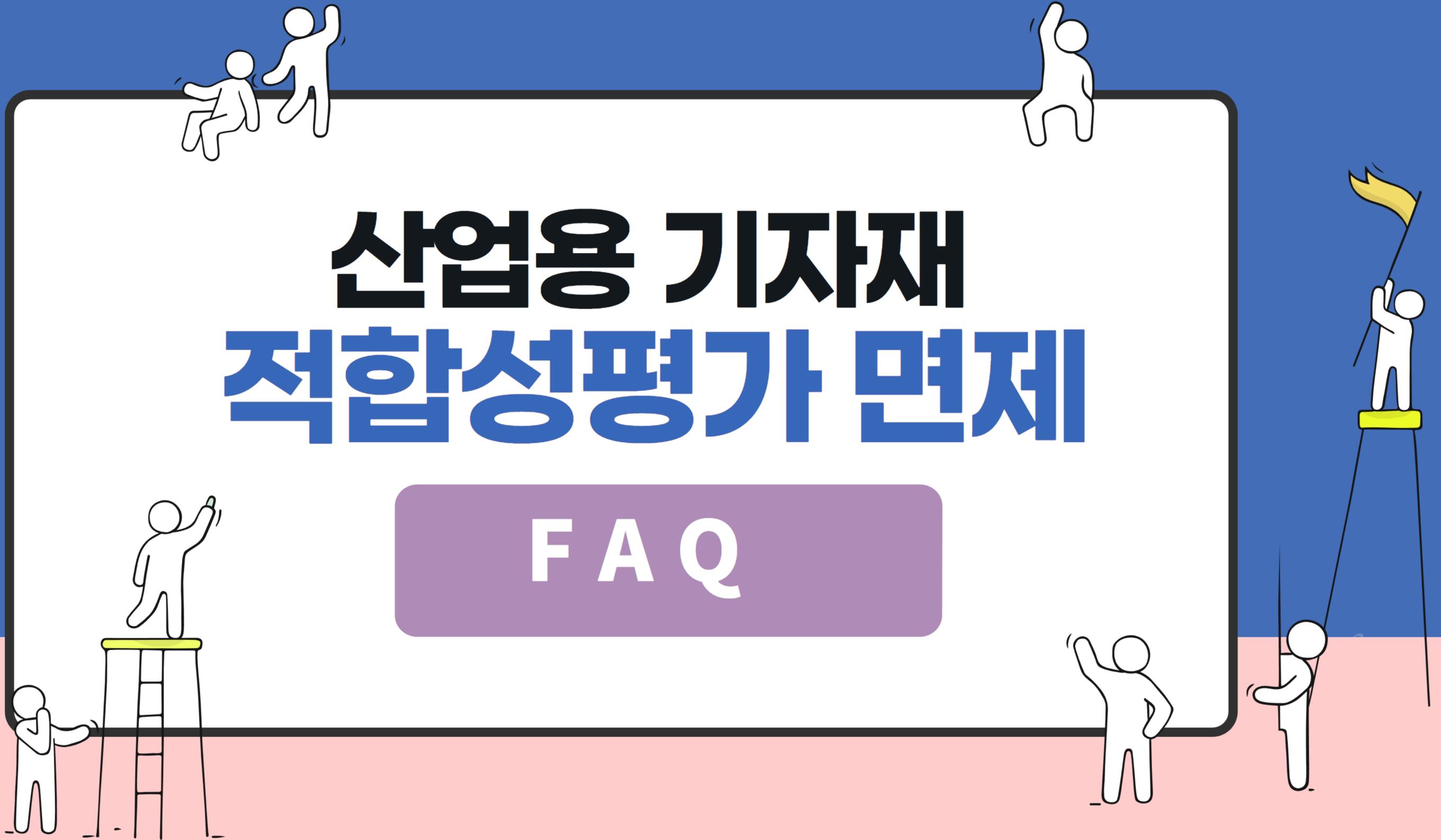


# 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

FAQ



#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.

##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

제18조(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)

1.~4. (현행과 같음)

5. **산업용 기자재**(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, 유통기록 관리가

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):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

가.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,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

나.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, 제품명, 모델명, 제조번호, 제조·수입현황, 판매·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

## 산업용기자재를 수입할 때, 면제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!

### A) 면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PASS) ▶ ② 통관단일창구 ▶ ③적합성평가 면제 확인(신청)서 작성  
(공통사항, 품목사항, 첨부파일) ▶ ④국립전파연구원 승인 ▶ ⑤산업용 기자재 통관  
(1일 소요, 주말·공휴일 제외)

#### 산업용 기자재 수입신청시 첨부파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



1.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: 사유서, 납품계약서 등 납품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
2.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: 수입계약서, 물품매도확약서, 화물송장(인보이스) 등

※ 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하여 직접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화물송장(인보이스) 제출

## Q2

### 산업용 기자재를 국내 제조 및 설치할 경우 면제절차를 알려주세요!
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([www.emsit.go.kr](http://www.emsit.go.kr)) ▶
- ②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▶
- ③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(신청)서 작성 ▶
- ④ 사유서를 첨부하여 면제 신청 ▶
- ⑤ 국립전파연구원 승인  
(1일 소요, 주말·공휴일 제외)

## Q3

### 산업용 기자재를 국내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면제절차를 알려주세요!
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([www.emsit.go.kr](http://www.emsit.go.kr)) ▶
- ②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▶
- ③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(신청)서 작성 ▶
- ④ 사유서 및 납품계약서 등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 
첨부하여 면제 신청 ▶
- ⑤ 국립전파연구원 승인 (1일 소요, 주말·공휴일 제외)



## 수입할 당시에 납품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,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신청 가능할까요?

A) 수입할 당시 **납품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.**

**면제 신청시에도 납품계약서 등 납품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**



납품계약 업체가 아닌 **다른 업체**에 면제 기자재를 **납품**하게 되면  
**해당 수량**에 대해서 **다시 면제 신청**을 하여야 합니다.

▶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([www.emsit.go.kr](http://www.emsit.go.kr))를 통해 면제 신청

Q6

면제 신청한 수량 전체 및 일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자 합니다.  
이 경우,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??

**A) 납품업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면제 신청한 수량 전체 및 일부를 수리·교환 목적의 예비품으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다만, 보관 후 납품 시 납품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**

Q7

납품업체와 계약한 수량을 초과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?

**A) 수리·교환 목적의 예비품의 경우 납품업체와 계약한 수량을 초과하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**

## 무선기기도 면제대상인가요?

**A) 산업용 기자재가 전파를 강하게 발사하는 이동통신 기기**(휴대폰, 기지국, 중계기 등), **간이무선국, 전자파 인체보호 대상 기자재 등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기자재이거나 적합인증 기자재를 포함하고 있으면,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서 별도의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.**

**산업용 기자재에 전파가 비교적 약하게 발사되는 블루투스, 와이파이 등 적합등록 무선기기 또는 적합등록이 가능한 무선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.**

**산업용 기자재에 와이파이 무선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 
우리나라에서 사용가능한 주파수와 관계없이 면제가 가능한가요?**

**A) 무선기기는 우리나라 주파수 분배, 할당,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 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운용자가 불법 무선국 운용자가 되어 전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**

**따라서, 산업용 기자재에 적합등록 또는 적합등록이 가능한 무선기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무선 부품(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)을 탑재하거나 장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.**

## Q10

**제조 공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.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나 컴퓨터 등도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되나요?**

**A) 산업용 기자재는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, 사무실이나 연구실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**

###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예시

- ✓ 생산·설비라인 등에 장착 및 사용되는 정보기기(컴퓨터류, PLC 등)
- ✓ 공장 내 공기순환이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목적으로 설치되는 대형 FAN(에어컨류)
- ✓ 생산·설비라인의 운영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식 스위치

**(!) 가정·상업환경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산업용기재로 면제 불가**

## Q11

**유통기록관리를 위해 기록해야 하는 면제승인번호란 무엇인가요?**

**A) 면제승인번호란 ① 면제확인번호(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)  
② 요건승인번호(수입하는 경우)를 말합니다.**

**※ 면제확인번호 및 요건승인번호는 면제승인 완료시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**

## Q12

**접근 통제 및 입출입 제한이 가능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는  
산업용 기자재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?**

**A)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.  
따라서,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 
적합성평가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여야 합니다.**



## 적합성평가 제도 소식을 정책메일로 받아보세요 !

※ 신청방법 : 연구원 누리집 → 적합성평가 민원 → 정책메일 서비스 신청

### KC전파인증 업무별 연락처

▷ 적합성평가 제도	☎ 061-338-4711~4715
▷ 적합인증 · 등록 · 변경 · 면제	☎ 031-644-7530~7538,7540
▷ 적합성평가 기자재 사후관리	☎ 031-644-7471~7474
▷ 미인증 기자재 조사 · 단속	☎ 080-700-0074

